

# “코로나19” 관련 對중국 수출입 물류 동향

제공 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
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

2020. 3. 11(수)

※ 추가로 필요한 물류 동향 정보 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수출입 물류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, 아래 연락처로 송부 부탁드립니다.

- 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(jn9900@korea.kr, 044-203-4022)
- ②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(kscn@kita.net, 02-6000-5672)

1

“코로나19” 대응 추진현황 (자료 : 국토교통부, 3/10기준)

## □ 한-중국 항공노선 현황

- (주간 전망) 한-중국 항공노선 운항횟수는 1월3주 대비 3월2주 89% 감편 예정(주1,204회 → 주138회, △1,066회, 왕복기준)
  - \* 국적사 주546회 → 주70회(△87.2%) / 외항사 주658회 → 주68회(△89.7%)
- (일일 도착) 3월10일 중국발 항공편 18편\* 도착 (3.11(수) 19편 예정)
  - \* 인천14, 김포2, 제주2 / 평시(179편, '20.1.20(월)) 대비 90% 감편

## □ 추진 현황

- (교통시설 방역활동) 공항·철도·버스·택시 등 교통시설과 차량에 대해 수시 소독을 실시하고, 마스크 착용 등 운수종사자 위생관리 강화
  - \* 교통시설·차량 방역 및 운수종사자 위생관리실태 수시 점검 실시(2.23~)
- (현장점검) 다중이용 교통시설(김포공항) 방문·점검(2차관, 3.10)
  - \* 보안검색요원 종사자 보호대책, 인력 운영방안, 지상조업 업체 등의 애로사항 청취 등
- (미국행 발열검사) 검역확인증 발급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시설 지원
  - 3.11일 출국검역 시행 대비, 검역확인증 발급 시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공간에 출국 검역조사실 설치 완료(T1 1개소, T2 2개소, 3.9)
  - \* 설치장소 : (T1) F체크인(495㎡), (T2) B체크인(210㎡), G체크인(210㎡)

- 미국행 출발편 침두 시간대(T1 221명, T2 400명) 혼잡 최소화를 위해 검역 인력 배치 협의, 탑승객 사전안내 협조요청 등 최종 점검(3.10, 항공실장)
  - \* 시간대별 미주노선 운영현황 : ① T2 9시대(400명) 및 10시대(345명) 여객 집중, ② T1은 10시대 221명, 18시대 166명 순으로 여객 집중

## 2

### “코로나19”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(자료 : 해양수산부, 3/10기준)

## 1. 해운항만분야 현황

### □ 선박 입항 현황

- (한·중 여객선) 여객 없이 화물만 운송 중, 금일 7척 입항(3.11(수) 3척 예정)
  - \* 14개사, 16개 항로 17척이 운항 중이었으나, 3월 2주간(3.9~3.15) 40항차(6항차, 13%감소)
- (한·일 여객선) 3.9(월)부터 여객운송 중지, 금일 3척 입항(3.11(수) 1척 예정)
  - \* 9개사, 5개 항로 11척이 운항 중이었으나, 3월 2주간(3.9~3.15) 10항차(48항차, 82.8%감소)
- (중국 등 기항 화물선) 부산, 인천, 광양 등 총 99척 입항(3.11(수) 101척 예정)
  - \* 중국 경유 94척, 홍콩 경유 14척, 마카오 경유 0척(중국·홍콩 중복 경유 9척)
  - \*\* 전년대비 입항 중국기항 화물선 5.33%감소(8,010척('19)→7,583척('20), 1.1~3.9, 2.29 제외)

### □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현황

- 인천항(62%)은 평시 대비 낮은 수준이며, 부산항(71%)은 평시 수준, 여수·광양항(75%)은 평시 대비 높은 수준
  - \* (평시 컨테이너 장치율) 인천항 75%, 부산항 71%, 광양항 69%

## 2. 조치사항

- (한일 여객선 운항 등) 일본의 여객선·카페리선 여객운송 금지(3.9.00시 ~3.31.24시)에 따라 여객전용선은 운항중단, 카페리는 화물\*만 운송
  - \* 카페리(3사, 3척)는 3.10부터 화물만 수송이 원칙이나, 팬스타라인의 경우 당분간 귀항편(오사카→ 부산)에 귀국하는 한국인 수송예정
- 한·일 카페리(펜스타드림)을 이용하는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부산 검역소의 특별입국 절차 점검(3.10, 부산청)
  - 입국한 18명(한국인) 입국자 전원에게 대해 특별검역신고서, 자가진단 앱 설치, 전화수신여부, 연락처 확인 후, 검역확인증 발급 완료
  - \* 3.12(목) 2명(1인 한국인) 입국예정으로 특별입국절차 준수여부 지속 점검 예정
- 일본의 한-일 카페리 여객운송 금지에도 불구하고, 활어운반차량을 통한 수산물 수출은 수출업체·바이어간 협의를 통해 진행 중
  - \* (부관훼리, 부산→ 시모노세키) 3.10, 21:00 출항, 활어차 5대(전복, 넙치) 선적
  - (고려훼리, 부산→ 후쿠오카) 3.10, 22:30 출항, 활어차 5대(넙치, 전복) 선적
  - \*\* 터미널(부산항)에서 일본인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여 국내 수산물을 일본항 카페리에 선적예정

## 참고 1

## 국제여객선 입항현황 (3.10일 기준)

### □ 한중 여객선 입항 현황 [14개사 16항로 17척, 금일(3.10) 7척 입항]

구분	선명(선사)	입항시간	입항경로	입국자수(한/중/기타)
금 일 (3.10, 화)	뉴골든브리지5(위동해운(주))	11:00	청도-인천	0명(화물만 운송)
	자정향(범영훼리)	10:00	영구→인천	
	향설란(한중훼리)	12:30	연태→인천	
	하모니원강(연운항훼리)	16:00	연운항→인천	
	비룡(대인훼리)	10:00	대련→인천	
	뉴그랜드피스(평택교동훼리(주))	09:50	위해-평택	
	오리엔탈펠8(영성대룡(주))	09:00	영성-평택	
예 정 (3.11, 수)	뉴골든브리지7(위동해운)	09:00	위해→인천	
	화동명주8(화동훼리)	10:30	석도→인천	
	오션블루훼일(연태훼리(주))	09:30	연태-평택	

### □ 한일 여객선 입항 현황 [9개사 5항로 11척, 금일(3.10) 3척 입항]

구분	선명(선사)	입항	입항경로	입국자수 (한/중/기타)	선원수 (한/중/기타)
기 준 일 (3.10, 화)	하마유(관부훼리)	08:00	시모노세카-부산	0명(0/0/0)	20명(14/0/6)
	팬스타드림(팬스타라인)	10:15	오사카-부산	18명(18/0/0)	57명(22/0/35)
	뉴카멜리아호(고려훼리)	18:00	후쿠오카-부산	0명(0/0/0)	30명(11/15/4)
	총 계			18명(18/0/0)	107명(47/15/45)
예 정 (3.11, 수)	뉴카멜리아호(고려훼리)	18:00	후쿠오카-부산	0명(0/0/0)	30명(11/15/4)
	총 계			0명(0/0/0)	30명(11/15/4)

\*하마유호(관부훼리), 팬스타드림호(팬스타라인) 및 뉴카멜리아호(고려훼리)는 화물 운송(~3.31까지)

\*\*홍콩, 마카오 국적 입국자 수는 '중국'란에 포함

## 참고 2

## 일본 여객수송금지에 따른 한·일 여객선 운항 계획

### □ 운항 개요

- 日 국토교통성의 여객 수송금지 요구(3.6.)에 따라 3.9(월) 여객전용선(5사, 7척)은 운항 중단
- 카페리선(3척)은 여객 수송을 중단하고 화물만 운송
  - 다만, 카페리선사 펜스타라인(韓)은 귀항편(일본 오사카→한국 부산)에 귀국을 원하는 한국인을 위해 당분간 한국인 여객을 수송할 예정
  - \* 3.12(목) 2명(1인은 한국인)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예정

### < 한일 여객선 운항 계획 >

구 분		선사(9개사)		항만	비고
여객 전용선 (5社, 7척)	新 휴항	1社	JR구주(日) * 3척	대마도 하카다	3.9. 운항 중단 (3.9~3.31. 휴항)
	既 휴항	4社	대아고속·스타라인· 미래고속(韓), 다이신(日) * 4척	대마도	既 휴항 ('19.8월, '20.2 또는 3월~)
카페리 (4社, 4척)	新여객 수송일부 중단	1社	팬스타라인(韓)	오사카	3.9. 귀국 편에 한국인 여객만 수송 豫
	新 여객 수송중단	2社	카멜리아라인(日)	하카다	3.9. 여객 수송 중단
			부관훼리(韓)	시 모 노 세키	현재 휴항중(~3.14.) 복귀후 여객수송 중단豫
既 여객 수송중단	1社	관부훼리(日)	시 모 노 세키	既여객중단(3.1.~3.14.) 지속 여객수송 중단豫	

\* 대마도행 국적여객 3사(대아, 스타, 미래고속) 및 외국적 1사(다이신)는 日수출규제,  
코로나19 등으로 既운항중단

## 1 동향

- 中(대만, 홍콩, 마카오 포함)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0,754명, 사망자는 3,136명 (3.10일 0시 기준, 中 국가위생건강위원회)
  -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발병 3개월 만에 우한 방문
- 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(Pandemic)이 현실화되었다고 경고했으나,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 가능한 Pandemic이 될 것이라고 발언
-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피해 가계·기업 대상 대규모 지원\* 및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IMF 블로그에 게시
  - \* 현금이전, 세제감면 등 재정정책 뿐 아니라 중앙은행의 시중은행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금융지원과 금리인하 또는 자산매입 조치도 신뢰도 제고에 도움
-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세 인하 등을 의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언
- 日 재무상은 코로나19 관련 두 번째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, 日 자민당은 10~20조엔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언급

## 참고

## 관련 통계

### 1 국제금융시장

구분	지수	'18년말	'19년말	3.6일	3.9일	3.10일	전일비	전년말비
주가	美 다우	23,327.5	28,538.4	25,864.8	23,851.0	24,751.0 <sup>1)</sup>	+3.77%	△13.27%
	유로Stoxx 50	3,001.4	3,745.2	3,232.1	2,959.1	3,046.0 <sup>1)</sup>	+2.94%	△18.67%
	日 니케이	20,014.8	23,656.6	20,749.8	19,698.8	19,867.1	+0.85%	△16.02%
	中 상해종합	2,493.9	3,050.1	3,034.5	2,943.3	2,996.8	+1.82%	△1.75%
금리	美 국채 10년(%)	2.68	1.92	0.76	0.54	0.67 <sup>1)</sup>	+13bp	△125bp
환율 <sup>2)</sup>	달러인덱스	96.4	96.8	96.6	95.3	95.8	+0.52%	△1.08%
	달러/유로	1.1455	1.1194	1.1225	1.1400	1.1356	△0.39%	+1.45%
	엔/달러	110.6	109.1	105.9	102.7	104.5	△1.72%	+4.43%
	위안/달러	6.8660	6.9788	6.9528	6.9441	6.9374	+0.10%	+0.60%
유가	WTI(\$)	45.4	61.1	41.3	31.1	32.4 <sup>3)</sup>	+4.18%	△46.97%
	브렌트유(\$)	53.8	66.0	45.3	34.4	35.6 <sup>3)</sup>	+3.49%	△46.06%
	두바이유(\$)	52.9	67.3	48.6	32.9	34.1 <sup>3)</sup>	+3.65%	△49.33%
VIX 지수		25.42	13.78	41.49	54.46	-	+12.52	+40.68
韓 CDS 프리미엄(bp)		39	22	38	47	37 <sup>3)</sup>	△10bp	+15bp

(출처: Bloomberg, 로이터) / 1) 18시 선물 기준, 2) 15:30분 기준, 3) 18시 기준

### 2 국내금융시장

지수	'18년말	'19년말	3.6일	3.9일	3.10일	전일비	전년말비
KOSPI	2,041.0	2,197.7	2,040.2	1,954.8	1,962.9	+0.42%	△10.68%
국고채금리(10년, %)	1.96	1.68	1.37	1.29	1.36	+7bp	△32bp
원/달러 환율	1,115.7	1,156.4	1,192.3	1,204.2	1,193.2	+0.92%	△3.08%
외국인 증권투자	+89,478	+108,550	△8,998	△27,011	△5,322	-	-
- 주식 순매수(억원)	△66,775	+16,364	△7,124	△14,511	△9,477	-	-
- 채권 순투자(억원)	+156,254	+92,186	△1,874	△12,500	+4,155	-	-

### 3 수출입

지수		'20.1월 (일평균)	'20.1월 (전체금액)	3.6~8일	3.9일	3.1~9일	
						누계	전월대비
수출 (억불)	전체	14.25	441.8	26.1	18.3	116.4	+27.7%
	對중국	3.13	96.98	5.89	3.97	28.8	+29.5%
	對중동	0.42	12.93	0.54	0.76	3.24	+19.2%
수입 (억불)	전체	13.80	427.8	23.7	23.4	115.2	+14.0%
	對중동 원유	1.40	43.38	4.01	0.82	6.83	△41.5%

(출처: 관세청)

##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(자료 : 외교부, 3/11(수) 15:00 기준) ※조치 종류별

### Ⅰ 입국금지 조치 : 49개

※ 명시적 입국 금지,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

#### 가.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: 43개 국가지역

구분	조치 사항
나우루	•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3.)
마셜제도	• 2019.12.31. 이후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(항공해상)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
마이크로네시아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몽골	• 2.27.-3.28.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8.)
바누아투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※ 2019.12.31. 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(2.28.) ※ 스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(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), 스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, 스완록 항공권 필요
부탄	• 3.6.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
아시아 태평양 사모아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(2.19.)
사모아 (미국령)	•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(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바레인 등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3.8.)
솔로몬제도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홍콩, 태국, 이란, 대만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
싱가포르	• 3.4.(수) 23: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(3.3.) ※ 싱가포르 시민,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(치명병원) 격리(3.5.) -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, 즉시 추방,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※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(동반자 포함)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
룩셈부르크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
구분		조치 사항
	키리바시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스키인입 의뢰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(2.11.)
	투발루	•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피지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집트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8.)
	홍콩	•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(홍콩, 마카오 제외),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영유 금지(3.6.) * 홍콩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
	홍콩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*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(2.25.) * 중국 대표에서 홍콩으로 입성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(2.8.)
미주	그레나다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0.)
	바하마	•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6.) *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
	아이티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9.)
	앤티바도	•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8.) * 앤티바도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
	자메이카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이란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* 영주권 보유자,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, 보건부(검사 및 격리) 입국 허용
	트리니다드 토바고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유럽	세르비아	• 한국, 이탈리아, 이란, 중국(일부 지역), 스위스(일부 지역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0.)
	카자흐스탄	• 3.8부터 한시적으로 한국, 중국, 이란 국외자의 입국영유 금지사중 발급도 중단(3.8.) - △외국 정부 대표단, △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, △항공사 승무원, △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* 3.8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외자의 입국 금지(사중 발급도 중단)(3.8.)
	키르기스스탄	•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6.)
	터키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.) * 철도사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을 가능하나 스유중상 시 사실격리 또는 입국금지, 스 무중상 시 14일간 자가격리
중남	레바논	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*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(거주증 소지자)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(레바논 국외자의 결혼한 외국인)은 입국 가능
	바레인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필리핀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1.) *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보건부(검사, 격리 등) 입국 허용

구분	조치사항
사우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집트, 이탈리아, 이라크, 쿠웨이트, 바레인, 레반트, 시리아, UAE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, 터키, 요안눌 방문경유한 모든 내외국인(항공해상)에 대해 입국금지(3.8.)</li> <li>•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(2.27.)</li> <li>• UAE, 쿠웨이트, 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(3.7.)</li> <li>• 한국, 이탈리아, 이집트 방문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가격리(3.8.)</li> </ul>
요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8.)</li> </ul>
요르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3.)</li> <li>• 중국(2.2), 이탈리아(2.24)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</li> </ul>
이라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터키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프랑스, 스페인 귀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(3.8.)</li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터키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</li> <li>• 외교관 및 공식 방문단은 입국가능</li> <li>• (쿠르드지방정부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, 이란, 터키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li>• 외교관 및 공식 방문단은 입국가능 / 2020.1.10 이후 상기 8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</li> </ul>
이스라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및 이스라엘 내 상주 거주자가 없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(3.9.)</li> <li>• 현재 이스라엘 전투 중인 여행자들은 포함(수입 내) 출입 요양</li> <li>•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(3.6.)</li> </ul>
카타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.9.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방글라데시, 이집트, 인도, 이란, 이라크, 레반트, 네팔, 파키스탄, 필리핀, 스리랑카, 시리아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8.)</li> <li>• 거주국가중 소지 여권을 불문하고 상기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입국금지(3.8.)</li> </ul>
쿠웨이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(항공 포함)금지(2.25.)</li> <li>•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(자3개월 유효)을 긴급요인을 인정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</li> <li>• 주한 공관외 비자발급 업무 일시 중단</li> </ul>
팔레스타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/ul>
아프리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9.)</li> <li>•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와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우중상시 14일간 격리 조치</li> <li>•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주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대만, 마카오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li>•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(3.3.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 3개주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</li> <li>•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,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(3.3.)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</li> </ul>

구분	조치 사항
방글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(여행, 사업 등 단기방문자) 대상 입국금지(3.8.)</li> <li>※ 영주, 노년,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(거주자) 대상 14일간 의무격리(3.6.)</li> </ul>
적토기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/ul>
코모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7.)</li> </ul>

## 나.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: 6개 국가지역

구분	조치 사항	
아시아 태평양	발레이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</li> <li>※ 사라왁주(2.29), 사바주(3.1)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</li> <li>※ 말레이시아 국민,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발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(2.28)</li> <li>※ 한국, 일본,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(2.28)</li> <li>※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일시 중단</li> </ul>
	몰디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, 경북, 충남, 부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.)</li> <li>※ 입국 전 14일 내 중국(베이징), 이란(2.28), 이탈리아(3.8), 방글라데시(3.8)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</li> </ul>
	미얀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.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(거주자)을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) 대상 입국금지(3.8.)</li> <li>- 3.12부터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지참 의무(3.11.)</li> <li>※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</li> </ul>
	인도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.8. (현지시간 00:00)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</li> <li>※ 한국발 입국자(목적불문)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(입국시 소지)</li> <li>- 영문 건강확인서는 △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 등 필요 △열,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'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' 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</li> <li>※ (주의)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당국에서 제3국 출발 여부, 한국 외 지역에서 14일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강확인서 지참 권장</li> </ul>
	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입국금지)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)</li> <li>- 상기 지역에 대해 3.7부터 경북 일부지역(경산시, 안동시, 영천시, 칠곡군, 의성군, 영주군, 군위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5)</li> <li>• (사중 제한) 3.9부터 △단수복수 사중 효과 방지, △한국, 홍콩, 마카오에 대한 사중면제조치 정지(3.5)</li> <li>• (장외 상해) 3.8부터 한국,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(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) 대기 요양 및 대응요를 사용 자제 요청(3.5)</li> <li>• (항공, 선박) 3.9부터 항공 여객선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(3.5)</li> </ul>

구분	조치사항
필리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경북), 중국, 홍콩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li>•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여,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푸터0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</li> <li>• 앙탈레스시의 경우 3.11부터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일시 전입 제한(3.10.)</li> </ul>

## ② 격리 조치 : 17개 국가지역(시설 격리)

### 가. 중국 지역

※ 시설 격리외에 자가격리도 포함(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 있음)

구분	조치사항	
중국 (지표별)	산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칭다오 류팅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일(총 7일)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할(3.6)</li> <li>• 웨이하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인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, 후반 7일간 자가격리 전환(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)(3.8.)</li> <li>• 옌타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인 1-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,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(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)(3.1)</li> </ul>
	허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저우시 전입시,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인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할(3.5)</li> </ul>
	랴오닝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및 발열 건강상태 보고(2.25)</li> <li>• 선양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인 중 △유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자율격리*, △유증상자는 지정 병원 이송(2.26)</li> <li>*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,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</li> </ul>
	지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장춘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</li> <li>• 옌지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4)</li> </ul>
	헤이룽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헤이룽장성(허랴빈공항, 무담장공항 등) 전입시,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5)</li> </ul>
	광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둥성(선전, 광저우 등) 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인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광둥성 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)(3.6)</li> </ul>
	푸젠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샤먼시 전입시,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인은 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기본검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(샤먼시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)</li> <li>• 푸젠성(푸저우시, 휘안저우시 등) 전입시,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인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</li> </ul>
	후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후난성 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인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△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), △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,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(3.4)</li> </ul>
	하이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하이난성(하이커우, 댜야 등) 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동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스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, 스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(3.3)</li> <li>※ 현재 한-하이난 직항편 없음.</li> </ul>
광시좡족 자치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시좡족자치구(난닝시, 구이린시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8)</li> <li>※ 현재 한-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.</li> </ul>
상하이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동/홍차오공항,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,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) (3.3)</li> </ul>
징주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남징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,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(2.29)</li> <li>옌징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(2.28)</li> </ul>
저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웨이저우공항/항저우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(도시별 격리방편 상이),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(2.29)</li> </ul>
쓰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칭두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(확진자)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(3.1)</li> </ul>
충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충칭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(확진자)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</li> </ul>
윈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윈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3)</li> <li>※ 현재 한-윈난성 직항편 없음.</li> </ul>
구이저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이저우성 진입시,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8)</li> <li>※ 현재 한-구이저우성 직항편 없음.</li> </ul>
산시성 (陝西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안 셴양공항,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3)</li> </ul>
간쑤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간쑤성 진입시,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, 단, 유증상자는 지정시설 격리</li> <li>※ 현재 한-간쑤성 직항편 없음.</li> </ul>
베이징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수도공항,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 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(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 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) 후 이상 없음시 14일간 자가격리(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,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편 준수),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음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</li> </ul>
톈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톈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,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발원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</li> <li>- 발원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확산검사 실시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발원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</li> <li>* 발원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</li> </ul> </li> </ul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나. 기타 국가지역

구분		조치 사항
아시아 태평양	마카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(지정시설) (2.28.)</li> <li>※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,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</li> </ul>
	베트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희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</li> <li>※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(2.29.)</li> <li>•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출발, 또는 경우(국적불문)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(발열, 기침, 호흡곤란)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(지정시설)(3.1.) / 상기 국가로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자는 '의료 검역 신고' 의무 작성</li> <li>- (의료검역 신고서) 연락처,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( <a href="http://suckhoetocandao.vn/khaiyte">http://suckhoetocandao.vn/khaiyte</a>)으로도 신고 가능(3.7.)</li> <li>※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(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,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(3.1.)</li> <li>※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할, 건강검진, 격리(3.1.)</li> </ul>
	스리랑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,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(3.6.)</li> <li>※ 격리자의 경우 7,500루피를 14일간 식대로 자리부담 필요</li> </ul>
미주	세인트루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(2.28.)</li> </ul>
	세인트루시아 그레나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2.28.)</li> </ul>
	세인트키츠 네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, 일본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</li> <li>- 입국자 대상 방문 전 8주간의 방문한 국가, 징수 등을 입력하여야 기재할 것을 요청</li> </ul>
유럽	루마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(의료 허브 항공 등 입국수단 무관) 외국인 대상 14일간 강제격리 또는 자가격리 조건하에서만 입국이 허용되며, 동 격리 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(3.9.)</li> </ul>
	벨라루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인박 후 모니터링(2.25.)</li> <li>※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2.25.)</li> </ul>
	사이프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(3.10.)</li> </ul>
	우즈베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△14일간 격리(지정시설), △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(3.4.)</li> </ul>

구분		조치 사항
	크로아티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10.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경도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 일부 지역, 독일 일부지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3.8.)</li> <li>※ 자국민, 한국(대구·경도 외)·중국(후베이성 외)·홍콩·일본·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</li> </ul>
	타지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격리(2.25.)</li> </ul>
	투르크메니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(2.28.)</li> </ul>
중동	모리타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3.3.)</li> </ul>
아프리카	라이베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(지정시설)(3.2.)</li> </ul>
	부룬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, 독일 방문 후 입국하거나, 입국 전 14일 이내 중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호텔)(3.5.)</li> </ul>

### 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:50개 국가지역

※ 사증 발급 중단, 자가격리(권고 포함), 도착 시 발열검사·검역 신고서 청구 등

구분		조치 사항
아시아 태평양	네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10.부터 한국·중국·일본·이란·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(3.3.)</li> <li>※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</li> <li>※ 연도를 경우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</li> </ul>
	뉴질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(3.5.)</li> <li>※ 3.17.까지 유효(3.8.)</li> </ul>
	대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(대만인 포함)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5.)</li> </ul>
	리오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감염신고서 작성 의무화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(2.27.)</li> </ul>
	방글라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(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)</li> <li>- 건강확인서(영문)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</li> </ul>
	브루나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본토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역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(3.5.)</li> <li>※ 관광,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</li> </ul>
	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4.부터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,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(3.5.)</li> <li>- 3.10.부터 한국,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및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(3.10.)</li> <li>※ "음성" 증명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 반드시 일본 지참</li> <li>3.3. 이전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(3.4.) △한국·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(2.28.)</li> <li>2.1. 이후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후 (중국) △ 1.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, △ 1.15 이후 중국 인후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, △ 2.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</li> </ul>

구분		조치 사항
특무		자 효력 중단, △ 1.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(2.3-1)
	북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마카오, 홍콩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승객 대상 △ 최근 48시간 이내 발원된 건강확인서(코로나-19 음성 확인)와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 포함의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을 지참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 가능(3.1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병력 환승 승객의 경우 상기 조치 미적용</li> </ul> </li> <li>- 발원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, 스무증상(발열, 콧물 등)이 병원으로 이송,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상태 권고 후 퇴원, 스무증상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 격리 상태 권고</li> </ul>
	몰리네시아 (프랑스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스검역실문지 작성 및 제출, 스환승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명하는 의료확인서/의료소견서 제출 (5일내)(2.27.)</li> </ul>
특무	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스검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, 스검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, 정밀검사 실시(48시간 이내)후 감염여부 확인(2.28.)</li> </ul>
	바베이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스검증증상 시 자가격리, 스검증증상 시 시설 격리</li> </ul>
	베네수엘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스발열검사 실시, 스검역진단서 작성 및 제출, 스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, 스무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(2.27.)</li> </ul>
	아르헨티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.8부터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</li> </ul>
	엘살바도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스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, 스무증상 시 병원 이송, 스확진 시 검증증상자는 자가격리, 검증자는 병원치료, 스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(3.5.)</li> </ul>
	온두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일본,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스발열검사 실시, 스검역진단서 작성 및 제출, 스무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, 스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(2.20.)</li> </ul>
	코스타리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,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(2.28.)</li> </ul>
	콜롬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필리핀, 이탈리아, 태국, 아랍에미리트, 싱가포르, 미국, 에콰도르, 스페인,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(2.24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모든 입국자(내외국인)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(3.5.)</li> </ul> </li> </ul>
	파나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스건강상태 문진, 스검역실문지 작성, 스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(3.8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무증상자 심층검사 실시, 확진시 병원 이송</li> </ul> </li> </ul>
	파라과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태국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의 인파류(인적사항, 현지 체류지, 인파처 등) 실시(2.29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파류를 통해 코로나-19 의심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(전화 문진) 실시(3.6.)</li> </ul> </li> </ul>
유럽	노르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이란, 이탈리아 북부, 중국, 일본,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(3.7.)</li> </ul>

구분	조치 사항
덴마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(대구경북), 이란, 중국(대만, 홍콩, 마카오 제외), 이탈리아(북부 지역)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3.2.)</li> </ul>
러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모스크바 모든 공항) 한국발, 중국발,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△진단 검사 실시, △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, △14일간 자가격리(3.3.)</li> <li>• *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대상 △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, △14일간 자가격리(3.3.)</li> <li>• * (모스크바 시외부)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6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(3.4.)</li> <li>• (사할린주) 한국, 일본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, △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(21일), △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</li> <li>• (연해주) 2.27.-4.1.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, 중국,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 통행된 이라지외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(2.27.)</li> <li>• (이르쿠츠크)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△발열검사, △설문지 작성, △검체 채취, △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(3.4.)</li> </ul>
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보건 당국에 신고, △14일간 자가격리 권고 △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(3.4.)</li> </ul>
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△검역설문지 작성/제출 및 발열체크 등, △검역관적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(2.24.)</li> <li>• *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(3.4.)</li> </ul>
북마케도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(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각 포함)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(2.27.)</li> </ul>
불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4.)</li> </ul>
슬로바키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.10.부터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*(동거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포함)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(3.9.)</li> <li>- 위반시 1,650유로 벌금 부과</li> <li>• * (대상범위)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로부터 슬로바키아로 돌아오는 필시체류 및 영구체류 거주자, 슬로바키아에 8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, 슬로바키아 내에서 고용된 자</li> <li>• * 한국인에 대한 80일 무비자 입국은 현행대로 가능하며,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허가 신청도 현행대로 가능</li> </ul>
아이슬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, △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(2.26.)</li> </ul>
아제르바이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모든 입국자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(자정 시설)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(2.28.)</li> </ul>
알바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</li> </ul>
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20.2.19. 이후 한국(대구경북경산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이로서비스(NHS)에 통보의무 부과(3.5.) /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경북 이외)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, 보건이로서비스(NHS)에 통보의무 부과(2.8.)</li> </ul>
오스트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.11.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(후베이성), 이란, 이탈리아(북부지역) 방문 후 입국(경우 포함)한 외국인(EU국외자 제외)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(입국전 4일 이내 발급된 인정) 제시 절차 시행(3.9.)</li> </ul>

구분		조치 사항
	케냐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
	불고공화국	• 한국, 프랑스, 이란, 이탈리아,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스자가 격리, 스프린터 모니터링 방문 및 2차적 유선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자가 격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실시(3.9.) ※ 자가격리 사항 미 준수 시 시설격리

붙임

##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(자료 : 외교부, 3/11(수) 15:00 기준) ※국가별 가나다順

번호	국가-지역	조치사항
1	가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5부터 신규 사증 발급 중단(3.5.)</li> <li>※ 공무 및 필수 방문자외 신규 사증 발급은 가능</li> </ul>
2	가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9.)</li> <li>※ 외교관(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) 및 거주자외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</li> <li>※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</li> </ul>
3	그레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10.)</li> </ul>
4	나우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3.)</li> </ul>
5	나이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△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</li> </ul>
6	네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10.부터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(3.3.)</li> <li>※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</li> <li>※ 인도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</li> </ul>
7	노르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이란, 이탈리아 북부, 중국, 일본,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(3.7.)</li> </ul>
8	뉴질랜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(3.5.)</li> <li>※ 3.17.까지 유효(3.9.)</li> </ul>
9	대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(대만인 포함)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5.)</li> </ul>
10	덴마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(대구경북), 이란, 중국(대만, 홍콩, 마카오 제외)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3.2.)</li> </ul>
11	라오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(2.27.)</li> </ul>
12	라이베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(지정시설)(3.2.)</li> </ul>
13	러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모스크바 모든 공항) 한국발, 중국발,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△진단검사 실시, △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, △14일간 자가격리(3.3.)</li> <li>※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△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, △14일간 자가격리(3.3.)</li> <li>※ (모스크바 시정부)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송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(3.4.)</li> <li>(사할린주) 한국, 일본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, △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(21일), △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</li> <li>(연해주) 2.27.-4.1.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, 중국,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로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로 등록된 이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(2.2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이르쿠츠크)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△발열검사, △설문지 작성, △검체 채취, △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(3.4)</li> </ul>
14	레바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li>※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(거주증 소지자)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-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)는 입국 가능</li> </ul>
15	루마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(육로,해로,항공 등) 입국수단 무관) 외국인 대상 14일간 강제격리 또는 자가격리 조건하에서만 입국이 허용되며, 동격리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(3.9.)</li> </ul>
16	르완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프랑스, 이란,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, △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, △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, △음성 반응시 14일간 자가격리(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) 및 보건당국 추적 조사, △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당국 일일 모니터링(3.8.)</li> </ul>
17	마다가스카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대만, 마카오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li>※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(3.3.)</li> </ul>
18	마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19.12.31. 이후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, 독일, 프랑스, 스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(항공해상)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</li> </ul>
19	마이크로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</li> </ul>
20	마카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(지정시설) (2.26.)</li> <li>※ 비거주자외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, 거주자외 경우 자가격리</li> </ul>
21	말라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(지정시설),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</li> </ul>
22	말레이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</li> <li>※ 사라왁주(2.29), 사바주(3.1)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</li> <li>※ 말레이시아 국민,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(2.28)</li> <li>※ 한국, 일본,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(2.28)</li> <li>※ 중국, 한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잠정 중단</li> </ul>
23	멕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, △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, 정밀검사 실시(48시간 이내)후 감염여부 확인(2.29.)</li> </ul>
24	모로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별도청구에서 입국심사, △발열검사 등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, 외부 샘플 검사 실시 (3일간 격리 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)(2.28.)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25	모리셔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 3개주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(2.24)</li> <li>※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,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(3.3)</li> </ul>
26	모리타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 시설)(3.3)</li> </ul>
27	모잠비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 격리, △유증상 시 격리(지정시설)(3.3)</li> </ul>
28	몰디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, 경북, 경남, 부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)</li> <li>※ 입국 전 14일 내 중국(본토)(2.3), 이란(2.26), 이탈리아(3.8), 방글라데시(3.9)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</li> </ul>
29	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보건당국에 신고, △14일간 자기격리 권고, △유증상 시 자기격리 의무(3.4)</li> </ul>
30	몽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.27.-3.28.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을 방문·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8)</li> </ul>
31	미얀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.7.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(거주지)을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대상 입국금지(3.6)</li> <li>- 3.12.부터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지참 의무(3.11)</li> <li>※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</li> </ul>
32	민주콩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,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(3.2)</li> </ul>
33	바누아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)</li> <li>※ 2019.12.31.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외사외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(2.28)</li> <li>※ △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(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), △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외사확인서 제출, △항목 항공권 필요</li> </ul>
34	바레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1)</li> <li>※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(검사, 격리 등) 입국 허용</li> </ul>
35	바베이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△경증증상 시 자기격리, △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</li> </ul>
36	바하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5)</li> <li>※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</li> </ul>
37	방글라데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(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사전 비자 취득 필요)</li> <li>- 건강확인서(영문)를 비자 신청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</li> </ul>
38	베네수엘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, △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, △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(2.27)</li> </ul>

번호	국가 지역	조치사항
39	베트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유효한 사증(을 소지한 한국인이)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(2.29.)</li> </ul> </li> <li>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출발, 또는 경유(국적불분)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 재발일, 기침, 호흡곤란)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(지정시설)(3.1.) / 상기 국가로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자는 '외로 검역 신고' 의무 작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외로검역 신고서) 인적사항,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이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( <a href="http://suckhoetoandan.vn/khaiyte">http://suckhoetoandan.vn/khaiyte</a>)으로도 신고 가능(3.7.)</li> </ul> </li> <li>※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의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(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,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(3.1.)</li> <li>※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할, 건강검진, 격리(3.1.)</li> </ul>
40	벨라루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(2.25.)</li> <li>※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2.25.)</li> </ul>
41	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 검역실문지 작성/제출 및 발열체크 등, △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</li> <li>※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(3.4.)</li> </ul>
42	부룬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,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호텔)(3.5.)</li> </ul>
43	부르키나파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(3.5.)</li> </ul>
44	부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3.6.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6.)</li> </ul>
45	북마케도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(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)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(2.27.)</li> </ul>
46	불가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4.)</li> </ul>
47	브루나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본토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(3.5.)</li> <li>※ 관광,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</li> </ul>
48	사모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(2.19.)</li> </ul>
49	사모아(미국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(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바레인)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3.8.)</li> </ul>
50	사우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집트, 이탈리아, 이라크, 쿠웨이트, 바레인, 레바논, 시리아, UAE를 방문경유한 모든 입국자(항공해상)에 대해 입국금지(3.8.)</li> <li>※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(2.27.)</li> </ul>

번호	국가-지역	조치사항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UAE 쿠웨이트, 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 이국로 입국 불가(3.7)</li> <li>* 한국, 이탈리아, 이집트,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가격리(3.8)</li> </ul>
51	사이프러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한국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(3.10.)</li> </ul>
52	세르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한국, 이탈리아, 이란, 중국(일부 지역), 스위스(일부 지역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0.)</li> </ul>
53	세이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</li> </ul>
54	세인트루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(2.26.)</li> </ul>
55	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2.26.)</li> </ul>
56	세인트키츠네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, 일본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</li> <li>- 입국자 대상 방문 전 8주에 방문한 국가,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</li> </ul>
57	솔로몬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홍콩, 태국, 이란, 대만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</li> </ul>
58	싱가포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3.4.(수) 23: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(3.3)</li> <li>* 싱가포르 시민,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(지정병원) 격리(3.5)</li> <li>-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,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처 측각 시행</li> <li>*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(동반자 포함)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</li> </ul>
59	스리랑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,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(3.8)</li> <li>* 격리차이 경우 7,500루피를 14일간 식대로 지부담 필요</li> </ul>
60	슬로바키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3.10.부터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(동거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포함)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(3.9)</li> <li>- 위반시 1,850유로 벌금 부과</li> <li>* (대상범위)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로부터 슬로바키아로 돌아오는 일시체류 및 영구체류 거주자, 슬로바키아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, 슬로바키아 내에서 고용된 자</li> <li>* 한국인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은 현행대로 가능하며,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도 현행대로 가능</li> </ul>
61	아르헨티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3.9.부터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</li> </ul>
62	아이슬란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, △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(2.26.)</li> </ul>
63	아이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9)</li> </ul>
64	아제르바이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모든 입국자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(2.28.)</li> </ul>
65	알바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</li> </ul>

번호	국가-지역	조치사항
66	앙골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(여행, 사업 등 단기방문자) 대상 입국금지(3.6)</li> <li>※ 영주, 노동,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(거주자) 대상 14일간 의무격리(3.6)</li> </ul>
67	에콰도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 및 분진표 작성, △유증상 시 병원 이송, △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, 중증상자 병원치료, △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(3.5)</li> </ul>
68	에티오피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전화 모니터링, △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(2.18.)</li> <li>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발열검사, △건강신고서(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) 추가 작성 요구(3.2)</li> </ul>
69	엘살바도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</li> <li>※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</li> </ul>
70	영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0.2.19. 이후 한국(대구·청도·경산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. 보건외로서비스(NHS)에 통보이무 부패(3.5) /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청도 이외)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. 보건외로서비스(NHS)에 통보이무 부패(2.6)</li> </ul>
71	오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8)</li> </ul>
72	오스트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11.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(후베이성), 이란, 이탈리아(북부지역)를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)한 외국인(EU국적자 제외)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(입국전 4일 이내 발급본 인정) 제시 절차 시행(3.9)</li> </ul>
73	온두라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대만, 일본,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 검진서 작성 및 제출, △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, △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(2.20.)</li> </ul>
74	요르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3)</li> <li>※ 중국(2.2), 이탈리아(2.24)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</li> </ul>
75	우간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,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</li> </ul>
76	우즈베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20.3.1. 이후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14일간 격리(지정시설), △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(3.4)</li> </ul>
77	이라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프랑스,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(3.6)</li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)</li> <li>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</li> <li>(쿠르드지방정부)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)</li> <li>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/ 2020.1.10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78	이스라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및 이스라엘 내 상주 거주자가 없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(3.9)</li> <li>※ 현재 이스라엘 진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(수일 내) 출국 요망</li> <li>※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(3.5)</li> </ul>
79	인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4부터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,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(3.5)</li> <li>- 3.10.부터 한국,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및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 제출 필요(3.10.)</li> <li>※ '음성' 증명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보건복지부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발급된 것만 유효, 반드시 원본 지참</li> <li>3.3. 이전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(3.4), △한국·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(2.28.)</li> <li>2.1. 이후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</li> <li>※ (중국) △ 1.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, △ 1.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, △ 2.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, △ 1.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(2.3-)</li> </ul>
80	인도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3.8. (현지시간 00: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</li> <li>※ 한국발 입국자(국적불문)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(입국시 소지)</li> <li>- 영문 건강확인서는 △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, △열,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으며 함께 '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' 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</li> <li>※ (주)에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당국에서 제3국 출발 여부, 한국 외 지역에서 14일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건강확인서 지참 권장</li> </ul>
81	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입국금지)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)</li> <li>- 심기 지역에 대해 3.7부터 경북 일부지역(경산시, 안동시, 영천시, 칠곡군, 의성군, 상주군, 군위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5.)</li> <li>(사증 제한) 3.9.부터 △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, △한국, 홍콩, 마카오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(3.5)</li> <li>(검역 강화) 3.9.부터 한국, 중국·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지역 또는 여행차이 경우 호텔)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(3.5)</li> <li>(항공, 선박) 3.9.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(3.5)</li> </ul>
82	자메이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이란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</li> <li>※ 영주권 보유자,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, 조건부(검사 및 격리) 입국허용</li> </ul>
83	잠비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6.)</li> </ul>
84	적도기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</li> </ul>
85	조지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(3.6)</li> <li>※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(시설 또는 자가)</li> </ul>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
86	중국	1 간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간우성 진입시,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, 단, 유증상자는 지정시설 격리</li> <li>※ 현재 한-간우성 직항편 없음.</li> </ul>
2 광둥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둥성(선전, 광저우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광둥성 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)(3.6)</li> </ul>	
3 광시좡족자치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광시좡족자치구(난닝시, 구이린시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8)</li> <li>※ 현재 한-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.</li> </ul>	
4 구이저우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구이저우성 진입시,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9)</li> <li>※ 현재 한-구이저우성 직항편 없음.</li> </ul>	
5 랴오닝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다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(2.25)</li> <li>• 선양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△유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자율격리, △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동(2.28)</li> <li>•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,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</li> </ul>	
6 베이징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도공항,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 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(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 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)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(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, 목적지가 다른 지역 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),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동</li> </ul>	
7 산둥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칭다오 쉼양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일(총 7일)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관할)(3.6)</li> <li>• 웨이하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, 후반 7일간 자가격리 전환(호텔 간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)(3.6)</li> <li>• 옌타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-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, 핵산검사 결과 전환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(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)(3.1)</li> </ul>	
8 산시성 (陝西省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안 셴양공항,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시인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3)</li> </ul>	
9 상하이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푸둥(홍차오)공항,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,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) (3.3)</li> </ul>	
10 쓰촨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청두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(확진자)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</li> </ul>	
11 윈난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윈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3)</li> <li>※ 현재 한-윈난성 직항편 없음.</li> </ul>	
12 장쑤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난징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할,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동(2.29)</li> <li>• 옌청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집집중자 지정호텔 격리(2.26)</li> </ul>	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	
		13	저장성 * 원주공항/양주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(도시별 격리당첨 상이),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(2.29)
		14	지린성 * 창춘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 * 옌지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4)
		15	충칭시 * 충칭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인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심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령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(확진자)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
		16	톈진시 * 톈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인 14일간 자가격리,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입시격리 -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-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심검사 실시 *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*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
		17	푸젠성 * 샤먼시 진입시, 최근 14일 내 감염실각 지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인은 (발열, 호흡기 증상 등) 기본검사 후 이상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(샤먼시 내 고령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) * 푸젠성(푸저우시, 취안저우시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감염실각 지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인은 핵심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
		18	하이난성 * 하이난성(하이커우, 셴야 등) 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인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심검사 실시 후 △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, △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(3.3) * 현재 한-하이난 직항편 없음.
		19	허난성 * 정저우시 진입시, 감염실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인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(3.5)
		20	헤이룽장성 * (하얼빈공항, 무단장공항 등) 진입시,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5)
		21	후난성 * 후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 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인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심검사 실시 후 △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후난성에 고령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), △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,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(3.4)
87	중앙아프리카공화국	*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*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이 고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△유증상자이 경우 * 14일간 자가격리(코로나19 환자 접촉자) * 최종 결과 전까지 사실격리(이심한자) * 지정 병원 격리 치료(확진자), △유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(3.6) *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	
88	짐바브웨	*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△입국시 검사, △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	
89	차드	*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프랑스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, △유증상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(3.8)	
90	카자흐스탄	* 3.6부터 한시적으로 한국, 중국, 이란 국적자이 입국경유 금지(사증 발급도 중단)(3.6) - △외국 정부 대표단, △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, △항공사 승무원, △국제 불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* 3.8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자이 입국 금지(사증 발급도 중단)(3.6)	
91	카타르	* 3.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방글라데시, 이집트, 인도, 이란, 이라크, 레바논, 네덜란드, 파키스탄, 필리핀, 스리랑카, 시리아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	

번호	국가·지역	조치사항
		입국금지(3.8.) ※ 거주지가 중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입국금지(3.9.)
92	케냐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
93	코모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7.)
94	코스타리카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,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기(2.29.)
95	콜롬비아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, 이탈리아, 태국, 아랍에미리트, 싱가포르, 미국, 에콰도르, 스페인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(2.24.) ※ 모든 입국자(내외국인)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(3.5.)
96	콩고공화국	▶ 한국, 프랑스, 이란, 이탈리아,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자가 격리, △보건센터 모니터링 팀은 매 2차례 유선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자가 격리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실시(3.9.) ※ 자가격리 사항 미 준수 시 시설격리
97	쿠웨이트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(환송 포함)금지(2.25.) ※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비자(3개월 유효)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※ 주한 공관의 비자발급 업무 일시 중단
98	룩셈부르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99	크로아티아	▶ 3.10.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청도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 일부지역, 독일 일부지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3.9.) ※ 자국민, 한국(대구·청도 외), 중국(후베이성 외), 홍콩, 일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
100	키르기스스탄	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6.)
101	키리바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(2.11.)
102	타지키스탄	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격리(2.25.)
103	태국	▶ 한국, 중국, 마카오, 홍콩, 이란, 이탈리아를 모든 승객 대상 △ 최근 48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확인서(코로나-19 음성 확인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 포함)와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 가능(3.10.) ※ 단순 안전 환승 승객 및 방편 환승 승객의 경우 상기 조치 미적용 -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, △유증상(발열, 콧물 등)시 병원으로 이송,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, △무증상인 경우에도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
104	터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.) ※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△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,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
105	투르크메니스탄	▶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(2.28.)
106	투발루	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
번호	국가 지역	조치사항
107	튀니지	•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(3.8.)
108	트리니다드토바고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109	파나마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스캔 감상태 문진, 스캔역실문지 작성, 스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(3.8.) ※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, 확진시 병원 이송
110	파라과이	•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태국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(인적사항, 현지 체류지, 연락처 등) 실시(2.29.) -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 (전환 문진) 실시(3.6.)
111	팔레스타인	•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112	폴리네시아 (프랑스령)	•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스검역실문지 작성 및 제출, 스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명하는 의료확인서/의료소견서 제출(5일내)(2.27.)
113	피지	• 3.7.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6.)
114	필리핀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경북), 중국, 홍콩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 ※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,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,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• 3.11(수)부터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앙헬레스시 진입 일시 제한(3.10.)
115	호주	•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 제외,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(3.5.) ※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※ 중국본토, 이란
116	홍콩	•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※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(2.25.) ※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(2.8.)

## 6

## [참고] 정부 지원정책

## □ 금융 지원

## ○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

지원기관	프로그램명	지원대상	지원한도 (억원)	전화번호
산업은행	경영안정지원자금 [기업당 최대 (중소 50억원, 중견 70억원) 금리감면 無]	중소·중견	2,000	02-787-5612 02-787-5615
	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[기업당 최대 (중소 50억원, 중견 70억원) 최대 1.0%p 금리감면]	중소·중견	1,000	
기업은행	특별지원자금 [기업당 최대 5억원, 최대 1.0%p 금리감면]	중소· 소상공인	1,000	1588-2588
수출입 은행	수입선 다변화 대출 [최대 (중소 0.5%p, 중견 0.3%p) 금리감면]	중소·중견	5,000	02-3779-6114 02-3779-6253
	신규 운영자금 지원 [최대 (중소 0.5%p, 중견 0.3%p) 금리감면]	중소·중견	5,000	
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	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[기업당 최대 10억원]	중소	250	1357
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	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[기업당 최대 0.7억원]	소상공인	200	042-363-7130
신용보증기금	우대보증 프로그램 [보증비율 상향(85%→90%), 보증료율 최대 0.2%p 차감, 심사절차 간소화]	중소· 소상공인	3,000	1588-6565
기술보증기금	특례보증 프로그램 [기업당 최대 3억원, 보증비율 상향(85%→95%), 보증료율 1.0% 고정]	중소· 소상공인	1,050	1544-1120
지역신용 보증재단	특례보증 프로그램 [기업당 최대 0.7억원, 보증비율 상향(85%→100%), 보증료율 0.8% 고정]	소상공인	1,000	1588-7365

## ○ 고용유지지원금 : 고용센터 (1350 → 1번)

-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(1일 6.6만원, 연간 최대 180일)

□ 무역애로 상담

- 중국 수출기업 : 무역협회 (02-6000-5237)
-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: 금융감독원 (1332 → 6번)
- 수급 관련 : 소재·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(1670-7072)
- 국내 통관
  - 인천세관(032-452-3639), 서울세관(02-510-1378), 부산세관(051-620-6954)  
대구세관(053-230-5182), 광주세관(062-975-8193), 평택세관(031-8054-7043)
- 중국 현지 통관
  - 북경 : +86-10-8531-0844 smlee17@mofa.go.kr / ultrachogosu@naver.com
  - 상해 : +86-21-6295-5000 yishin18@mofa.go.kr
  - 청도 : +86-532-8399-7732 hbpark19@mofa.go.kr / cnpark21@korea.kr
  - 대련 : +86-411-8235-6280 dokim17@mofa.go.kr / do8772@naver.com
  - 홍콩 : +852-2862-1566 sbsong19@mofa.go.kr
- 중국 현지 진출기업 : kotra (1600-7119)